

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’ 작성 예시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	
	당첨자 본인 성명 기재		당첨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		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			
	당첨자 본인 등본상 주소 기재		당첨자 본인 연락처 기재			
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			
	당첨자 본인명의로 예금 중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액 기재	당첨자 본인 명의로 주택, 채권,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액 기재				
	④ 증여·상속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			
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액 기재	당첨자 보유 현금, 펀드 / 보험 등 금융상품, 이에 준하는 자금을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액 기재				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:)				
	⑩번 항목 해당 시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 안에 내용 기재		⑥번 항목 해당 시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 안에 내용 기재			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⑦ 소개				
	타 부동산 매도액, 기존 보증(전세)금, 종전부동산 권리가액, 이에 준하는 자금을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시 금액 기재	②, ③, ④, ⑤, ⑥ 항목의 합산 금액 기재				
① 자금 조달계획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① 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자금 기재			
	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대출액을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측 ①, ②, ③ 대출 항목의 합산 금액 기재	② 신용대출	중도금 집단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기재			
		③ 그 밖의 대출	(대출 종류:) 원 금회 취득 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및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			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	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하여 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할 경우 기재		
차입금 등	⑨ 임대보증금	⑩ 회사지원금·사채				
	금회 취득 주택의 임차(전, 월세) 계약 시 받을 임대(전, 월세) 보증금을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시 금액 기재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사용시 기재				
	⑪ 그 밖의 차입금	⑫ 소개				
	가족, 친인척, 제3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시 금액 기재	⑦, ⑧, ⑨, ⑩ 항목의 합산 금액 기재				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			
	⑩번 항목 해당 시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 안에 내용 기재					
⑬ 합계	⑦, ⑧ 항목의 합산 금액 기재			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 기재 (⑦, ⑧, ⑨, ⑩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 기재)				
	⑮ 계좌이체 금액	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(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 모든 금액) 기재		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작성금지		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계좌이체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				
	지급 사유 (⑩번 항목 해당 시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 안에 내용 기재)			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		
	본인 또는 가족입주 체크 및 모집공고 상 입주예정일 기재	⑩ 항목 기재 시 필수체크		작성금지		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작성일자 기재 (서명 또는 인)						
제출인		당첨자 본인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				

※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.

※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함.

[참고 :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]

기재 항목		증빙자료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잔액증명서 등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거래내역서, 잔고증명서 등
	증여·상속	증여·상속세 신고서, 납세증명서 등
	현금 등 그 밖의 자금	소득금액증명원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
	부동산 처분대금 등	부동산매매계약서,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
차입금 등	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대출신청서 등
	임대보증금 등	부동산임대차계약서
	회사지원금·사채, 기타 차입금 등	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

[참고 :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예시]

자소서 기재항목		증빙자료	제출 여부	미제출사유
자기 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잔액증명서	○	제출완료
		기 타		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거래내역서	○	제출완료
		예금잔액증명서		
		기 타		
	증여·상속	증여·상속세 신고서	×	00월 증여 예정
		납세증명서	×	
		기 타	×	
	현금 등 그 밖의 자금	소득금액증명원		해당없음
	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	
		기 타		
	부동산 처분대금 등	부동산 매매계약서	×	매도의뢰 중으로 현재까지 매매계약 미체결
부동산 임대차계약서		×		
기 타		×		
차입금	금융기관 대출액	금융거래확인서	×	00월 중도금대출 신청 예정
		부채증명서	×	
		금융기관 대출신청서	×	
		기 타	×	
	임대보증금	부동산임대차계약서		해당없음
	회사지원금·사채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	해당없음
그 밖의 차입금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×	00월 차입예정	

※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○/× 표시

※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 ‘미제출 사유란’ 에 “해당없음” 으로 작성

※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(예시: 증여, 매매계약,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“00월 예정” 으로 작성)

※ 증빙자료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작성해도 제출완료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원	
		④ 증여·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	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관계() [] 그 밖의 자산(종류:)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소계 원	
	⑧ 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주택담보대출 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(대출 종류:)	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
		⑨ 임대보증금 원 ⑩ 회사지원금·사채 원	
		⑪ 그 밖의 차입금 원 ⑫ 소계 원	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원 [] 그 밖의 관계() 원	
		⑬ 합계 원	
	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 원	
		⑮ 계좌이체 금액 원	
	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 원	
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원			
지급 사유 ()	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2.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p>첨부서류</p>	<p>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: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주식·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·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증여·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: 증여세·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.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.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.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. 회사지원금·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------------	--

작성방법

1. ① "자금조달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,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,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.
2. ② ~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3. ② "금융기관 예금액"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(적금 등)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4. ③ "주식·채권 매각대금"에는 본인 명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5. ④ "증여·상속"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며,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6. ⑤ "현금 등 그 밖의 자금"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(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)을 적고,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"보유 현금"에 √ 표시를 하고, 현금이 아닌 경우 "그 밖의 자산"에 √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.
7. ⑥ "부동산 처분대금 등"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,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.
8. ⑦ "소계"에는 ② ~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⑧ ~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10. ⑧ "금융기관 대출액 합계"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, 주택담보대출·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,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.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의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을 제외하고,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,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 중 "보유"에 √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(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)를 적습니다.
11. ⑨ "임대보증금"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.
12. ⑩ "회사지원금·사채"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,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13. ⑪ "그 밖의 차입금"에는 ⑧ ~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14. ⑫에는 ⑧ ~ ⑪의 합계액을,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5. ⑭ "조달자금 지급방식"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16. ⑮ "계좌이체 금액"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.
17. ⑯ "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"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.
18. ⑰ "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"에는 ⑮,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(수표)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.
19. ⑱ "입주 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(다세대,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)으로 적으며, "본인입주"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, "본인 외 가족입주"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.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"그 밖의 경우"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

자소서 기재항목	증빙자료	제출 여부	미제출사유	
자기 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잔액증명서		
		기 타		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거래내역서		
		예금잔액증명서		
		기 타		
	증여·상속	증여·상속세 신고서		
		납세증명서		
		기 타		
	현금 등 그 밖의 자금	소득금액증명원		
	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	
		기 타		
	부동산 처분대금 등	부동산 매매계약서		
부동산 임대차계약서				
기 타				
차입금	금융기관 대출액	금융거래확인서		
		부채증명서		
		금융기관 대출신청서		
		기 타		
	임대보증금	부동산임대차계약서		
	회사지원금·사채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	
	그 밖의 차입금	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